

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8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19년 3월 4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 제11조제1항제9호는 ‘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’와 ‘보행을 방해하는 행위’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행위를 행정지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함.(안 제11조제1항제9호)

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붙임)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1조(행정지도)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.	제11조(행정지도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제11조(행정지도) ① (개정안과 같음)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	1. ~ 8. (개정안과 같음)
<신설>	<u>9.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</u>	<삭제>
<신설>	<u>② 시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청계천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.</u>	②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청계천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행정지도)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1조(행정지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시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 대상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청계천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